



제266회(정례회) 제3차본회의
2007년 12월 21일 (금)

심 사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
교육사회위원회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07. 12. 21.
교육사회위원회

I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년 12월 4일

충청북도교육감

나. 회 부 일 자 : 2007년 12월 4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2007. 12. 17 제266회 충청북도의회(정례회)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상정
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질의·토론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II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 : 이장길 기획관리국장)

가. 제안이유

시·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재산정
고시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변경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,072명에서

41명이 감원된 3,031명으로 함(안 제2조)

-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 : 변동없음
- 본청, 지역교육청, 직속기관, 지역소속 및 공립의 각급학교
정원 : 3,059명⇒3,018명(감 41명)

III. 검토보고 요지

(교육사회전문위원 이명우)

-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
규정이 개정(07.11.20)됨에 따라 교육청의 기획관리국장이 내년
1월 1일부터 국가직(4급)에서 지방직(3급)으로 전환됨.
- 그리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시행
규칙의 규정에 의거 표준정원과 보정정원을 매 2년마다 산정하여
고시토록 되어 있음,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(07.11.14)의 표준정원
고시에 의하면, 충북교육청이 3,031명으로 종전보다 41명이 감
축된 것으로, 이는 단위학교별 식품위생직(영양서) 공무원이 영
양교사로 전환됨에 따라 감축된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
다고 사료됨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V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VII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Ⅸ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97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7. 12. 4.
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제안이유

시·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(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혁신과-2127, 2007.11.14)이 재산정 고시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변경하고자 함

주요내용

가. 충청북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,072명에서 41명이 감원된 3,031명으로 함(안 제2조)

(1)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 : 변동없음

(2) 본청, 지역교육청, 직속기관, 지역소속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: 3,059명⇒3,018명(감 41명)

참고자료

가. 관계법령 발취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관련부서간 합의여부 : 해당 없음

라. 입법예고 :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의거 입법예고 생략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“3,072명”을 “3,031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중
“3,059명”을 “3,018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<u>3,072명</u>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 략) 2. 본청, 지역교육청, 직속기관,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: <u>3,059명</u> 	<p>제2조(정원의 총수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.....<u>3,031명</u></p> <p>....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<u>3,018명</u>

관계법령 발췌서

□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(개정 2004. 1. 29 대통령령 제8247호)

제14조(표준정원의 책정) ①교육감은 정원관리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정원(이하 “표준정원”이라 한다)의 범위안에서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.

②교육감은 교육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원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 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또는 7월에 하여야 한다.

④지방자치단체의 폐치·분합, 경계변경 또는 종류의 변경으로 인하여 시·도교육청의 표준정원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시·도교육청의 표준정원 산정방법이 마련될 때까지 학교수·학급수 및 지역교육청수 등이 유사한 다른 시·도교육청의 표준정원을 참작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정원에 의할 수 있다.

제19조(정원의 규정) ①시·도교육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1.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

2. 본청, 지역교육청, 직속기관,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

②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범위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기관별로 당해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□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
(개정 2004. 1. 30 교육인적자원부령제824호)

제3조 (표준정원의 산정) ①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·도교육청별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은 별표 1의 산식에 의하여 정한다.

②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·직급별·직렬별로 정원관리현황을 작성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영 제14조제2항에서 "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 정원"이라 함은 표준정원에 보정비율 1.03을 곱하여 산출한 정원(이하 "보정정원"이라 한다)을 말한다.

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을 매 2년마다 8월중에 산정하여 고시한다.

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산정함에 있어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버린다.

[별표 1] <개정 2004.1.30>

시·도교육청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산식(제3조제1항관련)

1. 특별시·광역시

현정원에 대한 조정정원 $+(5.793702 \times \text{학교수 증감분} \times 0.6 + 0.1919011 \times \text{학급수 증감분} \times 0.4) \times 1.15 + 70.9 \times 2$ 국6과 지역교육청 증감분 $+ 57 \times 4$ 과 지역교육청 증감분 $+ 40.3 \times 2$ 과 지역교육청 증감분

2. 도

현정원에 대한 조정정원 $+(5.022132 \times \text{학교수 증감분} \times 0.6 + 0.3594281 \times \text{학급수 증감분} \times 0.4) \times 1.15 + 61.6 \times 2$ 국6과 지역교육청 증감분 $+ 51.5 \times 4$ 과 지역교육청 증감분 $+ 31.6 \times 2$ 과 지역교육청 증감분

비 고

1. 현정원에 대한 조정정원은 각각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.

가. 특별시·광역시

$[\text{현정원} + \{1.720094 \times (\text{학급수} \div \text{학교수}) \text{의 자연로그값} \times \text{학교수} + 168.1659 \times 2 \text{ 국6과 지역교육청수} + 177.8311 \times 4 \text{ 과 지역교육청수} + 105.4566 \times 2 \text{ 과 지역교육청수} + 161.7123\}] \div 2$

나. 도

$[\text{현정원} + \{1.910288 \times (\text{학급수} \div \text{학교수}) \text{의 자연로그값}\} \times \text{학교수} + 123.1787 \times 2 \text{ 국6과 지역교육청수} + 49.33297 \times (2 \text{ 과 지역교육청수} + 4 \text{ 과 지역교육청수}) + 225.1432] \div 2$

2. 학교수·학급수 및 지역교육청수는 현정원을 조정한 연도의 4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

3. 학교수·학급수 및 지역교육청 증감분은 각각 현정원을 조정한 연도에 대한 당해연도의 증감분을 말하며, 해당연도의 4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

□ 시·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 (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혁신과-2127, 2007. 11. 14)

구 분	표준정원	보정정원	비 고
충청북도교육청	3,031	3,121	